고 성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448호 2020. 11. 10.(화)

입 법 예 고

고성군 공고 제2020-1728호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입법예고 …… 2

고 시

회					
•					
람					

발행: 고성군, 편집: 군정혁신담당관(670-2642, 행정 2642)

고성군 공고 제2020-1728호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성군 자치법규 입법예 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 11. 10. 고 성 군 수

1. 제정이유

2016. 8. 12.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6항에 따라 고성군수의 감독을 받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체적인 감사 대상과 감사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3조)
- 나. 감사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 근거와 공동주택의입주자 및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5조)
- 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계획 수립, 감사반의 구성 및 사전조사의 실시, 감사의 실시, 감사반의 유의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10조)
- 라. 감사 종료 후 감사에 대한 결과 통지 및 행정처리에 대한 사항과 감사요청인의 인적사항 보호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제14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건축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 2) 전화: (055) 670-2272, 팩스: (055) 670-219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1)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 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 [전화: (055)670-2272]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정문 1부.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 보호를 목적으로 하다.
- 제2조(감사의 대상)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 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 제3조(감사범위 등) 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법 제93조 및 같은 영 제96조 각 호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범위에서 제외한다.
 -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 2.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조사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5. 그 밖의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결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4조(감사요청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3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서식)
 - 3. 감사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 ② 군수는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5조(감사실시 결정) ①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감사요청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③ 감사실시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감사장소 및 장비제 공 등 감사실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감사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 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
 -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 2. 감사 대상 및 감사 기간
 - 3. 감사 범위 및 감사 사항
 - 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담된 업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감사반의 구성) ① 군수는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하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민간 전문가를 감사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건축사·기술사·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그 밖에 공동주택 감사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사전조사의 실시)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 제9조(감사의 실시)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10일 전까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관리주체 등"이라 한다), 그 외감사를 받을 자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

- 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 ③ 군수는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대상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④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감사요청인 대표자 및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원 및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군수는 감사 요청인 또는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신분 공개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이상 인적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감사반원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 2. 감사반의 편성
 - 3. 감사총평
 - 4. 중점 감사사항
 -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이 필요한 사항
 - 6. 건의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 7. 현지 조치사항
 - 8. 특기사항
 - 9. 그 밖에 감사 실시 사항
 - ② 감사결과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감사결과 통지) 군수는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감사요청인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군수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한 공금횡령ㆍ뇌물수수 등의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감사결과의 처리함에 있어 내부 제보자 보호와 비위・비리 가담자의 자백에 대한 정상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요청인의 비밀보호) 군수는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요청서

대상단지	단 지 명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I 대장인시	주 소					
요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대 표	전화번호			거 주 지 (동·호수)		
동의인수	동의세대수 (동의인수)			전체세대수		
감사대상	※입주자대표	회의의 업무 / 🤄	란리주체・관리	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	회의 업무
감사요청 사항·사유	※감사요청의 별지 작성	원인이 되는 *	법령위반 사항	을 구체적으로 기	재하되 내용이	당을 경우
기 타	※감사요청 시) 하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	소송 유무 및 참고	1가 될 수 있는	정보
				군 공동주택관 위와 같이 감/		
		20 닉	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 귀하					
첨부서류	1. 요청인 2. 관련 증					

■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단 지 명	주 소	
감사요청 사 유 (간략히)		

연번	尽	호 수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서명 또는 날인
						조근 일인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2021년 5,000천 원 예산 편성
 - 전문 감사관 수당 및 여비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1호
 - 예산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워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와 관련한 재정수반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를 생략함

작성자: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김종평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가.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 다. 「주택법」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 설
-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 동주택
- 라.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 3. "공동주택단지"란「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 4.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 동주택단지를 말한다.
-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 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 다. 주택관리업자
- 라. 임대사업자
- 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11. "주택관리사보"란 제6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 12. "주택관리사"란 제67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 13. "주택관리사등"이란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를 말한다.
- 14. "주택관리업"이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 자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한다.
- 15. "주택관리업자"란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16. 삭제 <2016.1.19>
- 17. 삭제 <2016.1.19>
- 18.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한다.
- 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20. "임대사업자"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 21. "임차인대표회의"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임차인 대표회의 및「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한다.
-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 ·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 · 관리 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 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 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 4. 관리규약의 제정 · 개정
- 5. 시설물의 안전관리
-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 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 ② 법 제93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공보 제448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공동	주택관	리에 관한 감사 조리	ᆌ 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I	반 의	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 찬성	·의견 반대	수정안	수정사유					

고성군 고시 제2020-251호

봉치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기본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제58조에 따라 봉치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6. 고 성 군 수

- 1. 사업의 명칭 : 봉치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 2. 사업의 목적 :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위생 및 안전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여 농촌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3. 사업비 : 1.731.9백만원(국비 1.221, 지방비 426, 자부담 84.9)
- 4. 주요사업내용
 - 가. 주택정비 :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개량, 집수리 등
 - 나. 생활위생인프라개선 : 재래식화장실 정비, 봉치문화활력소 리모델링 등
 - 다. 안전확보: 사면보강, 구거정비, 경사지 노면정비, 안전보행로 조성 등
 - 다. 경관 등 환경개선 : 노후 위험담장 정비, 마을안내판 설치 등
 - 라. 휴먼케어 :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마을 클린 서비스 등
 - 마. 지역역량강화 : 주민 정보화 교육, 갈등관리 및 동기화교육, 선진지 견학 등
- 5. 사업시행자 : 고성군
- 6.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ਨੀ ਸੀ	토지스	노재 지	-) ul	-) D	지 적	편입	E 7 1 0 7	n) =
연번	읍·면	리	지 번	지목	(m²)	면적 (㎡)	토 지 소 유 자	비고
1	개천	봉치	351-4	대	494	494	봉치부*	
2	개천	봉치	351-5	대	121	121	김순*	

고성군 고시 제2020-252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6. 고 성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민원봉사과(☎055-670-277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연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상리면 무선리 308	상리면 무선5길 134	2020. 11. 06.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1126	행정구역명(상리면 무선리)을 이용하는 다섯번째 도로	
2	상리면 망봉리 840	상리면 망봉로 127	2020. 11. 06.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도로의 시종점인 상리면 망림리와 영현면 봉발리를 연결하는 길임을 반영	
3	대가면 척정리 1697-1,02	대가면 척정1길 235	2020. 11. 06.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대가면 척정리)을 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4	영현면 영부리 1033-1	영현면 고봉로 463-21	2020. 11. 06.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상리면 고봉리)을 이용하여 고봉로로 명명	
5	회화면 봉동리 909-3	회화면 봉동6길 8	2020. 11. 06.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회화면 봉동리)을 이용하는 여섯번째 도로	
6	거류면 은월리 239-3	거류면 은월7길 44-19	2020. 11. 06.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거류면 은월리)을 이용하는 일곱번째 도로	
7	삼산면 장치리 132-5	삼산면 공룡로 1556-14	2020. 11. 06.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공룡발자국 화석지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	
8	상리면 무선리 산149-1	상리면 무선2길 290	2020. 11. 06.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1126	행정구역명(상리면 무선리)을 이용하는 두번째 도로	
9	대가면 연지리 7-1	대가면 연지3길 25-61	2020. 11. 06.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대가면 연지리)을 이용하는 세번째 도로	
10	회화면 배둔리 1350-3	회화면 마구들1길 197	2020. 11. 06.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1126	자연지명인 마구들길을 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11	영오면 오서리 602	영오면 영회로 29-54	2020. 11. 06.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도로의 시종점인 영오면과 회화면을 연결하는 길임을 반영	
12	개천면 용안리 600	개천면 구만로 145	2020. 11. 06.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구만면)을 이용하여 구만로로 명명	
13	구만면 광덕리 808	구만면 효락2길 22-10	2020. 11. 06.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구만면 효락리)을 이용하는 두번째 도로	
14	마암면 신리 339-11	마암면 신리1길 39	2020. 11. 06.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마암면 신리)을 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도로명주소 폐지

연 번	연 관할 번 구역	도로명주	소	폐지	폐지사유	비고
번	구역	도로명	건물번호	고시일	페시//TT	비끄
1	고성읍	중앙로	75	2020. 11. 06.	건축물대장 말소	
2	삼산면	두포로	676-1	2020. 11. 06.	건축물대장 말소	
3	대가면	암전1길	391	2020. 11. 06.	건축물대장 말소	
4	개천면	구만로	145	2020. 11. 06.	건물신축을 위한 건물 멸실	